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1379

2016년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(찬성자 11명)

나. 발 의 일 : 2016년 8월 18일 다. 회 부 일 : 2016년 8월 22일

라. 상 정 일 :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

2016년 12월 6일 상정·의결(수정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인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어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으나, 표창을 받은 자가 재교부를 요청하면 표창장을 재교부하도록 하여 공적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 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함(안 제17조).
- 고의적으로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음(안 제17조 단서 신설).
-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함(안 제17조의 2제1항 신설).
- 기록부에 재교부 사실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16. 8. 26 ~ 2016. 9. 2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동 개정조례안은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등의 분실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표창장을 재교부하도록 하여 공적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자 하는 것임.
 - ※ 표창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지역사회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 및 자치구, 개인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,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과 상장 및 감사장으로 분류되고, '표창장과 상장'은 시장과 3급 이상의 소속기관의 장, 소방서장이 수여하며, '감사장'은 계급과 관련 없이 소속기관의 장이면 수여할 수 있음.

※ 표창 분류

구 분	수여대상	수여 사유
1 4	① 시·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	1 1 1 11
1 o	기업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(이하 공무원 등)으로서 3년 이상 근무 한 자	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.
표창장	② 자치구 및 소속기관	우수한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
	③ 개인 및 단체	지역사회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앙양 및 시 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함.
	④ 순직 공무원	공무수행 중 순직
상장	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, 자치구,	교육훈련성적 등 우수한 평가성적
(8, 9, 9, 9, 9, 9, 9, 9, 9, 9, 9, 9, 9, 9,	개인 및 단체	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
감사장		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현저 히 기여한 공적
	개인 및 단체	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현저 히 기여한 공적

가. 표창장 등의 재교부(안 제17조)

○ 동 개정안은 표창을 받은 자가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도록 하고, 고의적으로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표창사실확인) 표창을 받은 자가 표	제17조(표창장 등의 재교부) 표창권자는 표창
<u>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</u>	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
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	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
재교부하지 아니하고,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	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한다. 다만, 고의적으로
교부한다.	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
	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
	부에 갈음할 수 있다.

- 표창장 등의 분실로 재교부 요청시 표창장을 재교부할 경우 표창을 받은 자 의 사기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「상훈법」및「정부표창규정」상에는 표창장 등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, 재교부 대신 사실확인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음. 표창은 표창권자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표해서 수여하는 것으로 그 영예(榮譽)성을 감안하여 재교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 - ※「상훈법 시행령」에 따르면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.
- ◆ 「**상훈법 시행령**」제31조(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)
 - ③ <u>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</u>. 다만,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···〈중략〉··· 신청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◆ 「정부표창규정」제19조(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등의 재발급 등)
 - ② 대통령 표창장·상장 및 감사장과 국무총리 표창장·상장 및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행정자치부장관은 ···〈중략〉··· 신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<u>무총리 표창</u>장·상장 및 감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최근 3년간 서울시장의 시민 표창현황을 살펴보면, 2014년 6,703건, 2015년 7,960건, 2016년 4,530건(10월 기준)이며, 최근 3년간 민간인 및 민간단체 재교부 요청 건은 97건(2014년 40건, 2015년 28건, 2016년 29건)으로 나타났으며, 재교부 요청 주요사유는 개인보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▶ 서울시장 표창 및 상장·감사장 수여 현황(공무워표창)

(기준 : 2016.10.31.)

구분	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계	27,226	5,749	5,650	6,271	6,495	3,061
표창장	24,944	5,363	5,240	5,634	5,912	2,795
상장	2,237	381	397	626	573	260
감사장	45	5	13	11	10	6

▶ 서울시장 표창 및 상장·감사장 수여 현황(시민표창)

(기준 : 2016.10.31.)

구분	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계	30,819	5,324	6,302	6,703	7,960	4,530
표창장	20,129	3,639	3,653	4,510	5,217	3,110
상장	10,213	1,602	2,541	2,111	2,600	1,359
감사장	477	83	108	82	143	61

▶ 최근 5년간 연도별 표창장 재교부 요청 건수 및 사유

○ 공무원 및 공공단체

연 도	ᅀᅯᆌᄼ	교부내역	비고	
연도	요청건수	개인보관	기관제출	" " "
2012	3	2	1	
2013	8	2	6	
2014	8	0	8	
2015	8	2	8	
2016	11	4	7	

○ 민간인 및 민간단체

연 도	요청건수	교부내역(용도)		비고
전 또		개인보관	기관제출	비고
2012	23	18	5	
2013	20	17	3	
2014	40	35	5	
2015	28	22	6	
2016	29	$\overline{24}$	5	_

- 집행부는 표창장 분실·파손에 대한 고의성 여부 판단 불가로 표창장 재교부가 남발될 경우 표창의 영예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,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의 재교부 요청 시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기존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한편, 개정안대로 표창장을 재교부할 경우 첫째,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이전 표창권자의 명의로 표창장을 재교부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, "고의성"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재교부가 남발될 경우 표창장의 영예성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 - 다만, 표창장 등을 수여받았으나, 실제 이사 등 다양한 사유로 분실하여 표창 수여를 기리고자 하는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

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, 국가의 「상훈법」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표창권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2) 기록부의 비치(제17조의2)

○ 안 제17조의 2는 표창을 받은 자와 재교부 받은 자의 기록을 작성・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재교부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.

「정부표창규정」

제15조(이중 표창의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.

제19조의2(기록부 비치)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・관리하여야 한다.
- 표창수여자에 대한 기록·관리는 「정부표창규정」제19조의2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,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는 등(동 규정제15조) 표창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바, 개정안은 표창수여자의 관리 및 수여 사실 확인과 관련된 민원을 원활하게처리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- 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○ 현행과 같이 표창을 받은 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- 현행과 같이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 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 하고,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(안 제17조).
-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되도 록 함(안 제17조의2).
- 8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(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.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1379 제안년월일 : 2016년 12월 6일 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현행과 같이 표창을 받은 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현행과 같이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 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 하고,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(안 제17조).
-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되도 록 함(안 제17조의2).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는 현행과 같이 하고.

안 제17조의2 제2항 중 "재교부 사실"을 "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제17조(표창사실확인)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,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.	제17조(표창장 등의 재교부) 표 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표 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한다. 다만, 고의적으로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.	제17조(표창사실확인) <u>(현행</u> <u>과 같음)</u>
〈신 설〉	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<u>재교부 사실이</u> 포함되어야 한다.	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 관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 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 되어야 한다.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

-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표창사실확인) 표창을 받은 자가 표 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,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.	제17조(표창사실확인)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 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.